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3년 7월 19일(금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(2110-5141), 박주현 사무관(2110-5293)

## 산업통상자원부, 대형마트·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

**- 7.24부터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·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 -**

**- 7.18, 7.19, 광역·기초 지자체 대상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설명회 개최 -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**대규모점포·SSM의 "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"를 7.24일부터 시행**한다고 밝힘

* '13.1.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대규모점포·SSM 개설(변경)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(7.24시행)

○ 그간 산업부는 「유통산업발전법('13.1.23. 공포, 7.24. 시행)」 **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을 추진·완료**하여 법률이 발효되는 7.24일에 맞춰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

○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**7.18, 19일 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**를 대상으로 **「유통산업발전법」 설명회를 개최**함

*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지자체 설명회 개요
  · 일시·장소 : 7.18(목) 14:00-17:00 대한상의 B2 의원회의실
  7.19(금) 14:00-17: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(대회의실)
  · 참석 : (공동) 산업부, 중기청, 체인협, 상인연, 안승호·박진용 교수 등
  (7.18) 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 지자체 (7.19) 경기 이남 지자체



□ **(배경 및 경과)**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「유통산업발전법('13.1.23. 공포, 7.24. 시행)」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"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"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입함

○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*을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을 완료**함

* 업계간담회(5.10) : 대한상의, 체인스토어협회, 상인연합회, 체인사업협동조합 등
** 규제·법제처심사 → 차관(7.12)·국무(7.16)회의 → 공포(7.22) 및 발효(7.24)

□ **(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의무)** 대형유통업체는 7.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(SSM)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*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

* 점포의 소재지 변경,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, 대규모점포의 업태(대형마트·백화점·전문점·쇼핑센터·복합쇼핑몰·기타)를 변경하는 경우

○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(토요일·공휴일 불산입)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, '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'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

-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, 상권영향분석의 범위, 인구통계 현황, 기존 사업자 현황,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

-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·경제를 활성화,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은 배제됨

□ **(지자체 설명회)** 한편, 산업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없이 정착·시행될 수 있도록 7.18, 19일 양일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「유통산업발전법」설명회를 개최함

* 「유통산업발전법」지자체 설명회 개요
- 일시·장소 : 7.18(목) 14:00-17:00 대한상의 B2 의원회의실
  7.19(금) 14:00-17: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(대회의실)
- 참석 : (공동) 산업부, 중기청, 체인협, 상인연, 안승호·박진용 교수 등
  (7.18) 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 (7.19) 경기 이남

○ 양일간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안승호 교수, 건국대 박진용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, 직접 시연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안내함

○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·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,

- "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"의 도입을 계기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적극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·조정을 통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주문함

□ 산업부는 "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" 도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·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

○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-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협조 체제를 강화·유지하고 지자체별 영업규제 등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박주현 사무관(☎ 02-2110-52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붙임 1** 「유통산업발전법」지자체 설명회 개요

## 1. 추진 배경

□「유통산업발전법」시행령·시행규칙 2차개정 완료(7.24) 후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설명회 개최

## 2. 설명회 개요

### □ 1차 설명회

○ 일시 : 2013. 7. 18일(목), 14:00~17:00

○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

○ 참석 :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, 중기청 등/서울·경기·강원권 지자체*

*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 및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84개

### □ 2차 설명회

○ 일시 : 2013. 7. 19일(금), 14:00~17:00

○ 장소 :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대회의실

○ 참석 :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, 중기청 등/경기이남권 지자체*

*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, 세종 및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44개

## 3. 세부 프로그램(안)

* 사회: 유통물류진흥원

| 시 간 | | 주요 내용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14:00~14:05 | 5′ | 개 회 사 |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|
| 14:05~14:25 | 20′ | 개정 유통법 후속조치 추진동향 및 협조사항 | 산업부 유통물류과장 |
| 14:25~14:35 | 10′ | 상생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|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|
| 14:35~15:20 | 45′ | (18일) 유통산업 20년, 과거와 현재 | 가든파이브 김인호 대표 |
| | | (19일) 유통산업의 현재와 미래 | 오모가리 김형중 대표 |
| 15:20~15:30 | 10′ | 휴 식 | |
| 15:30~16:00 | 30′ |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도운영 방안 | 안승호·박진용 교수 |
| 16:00~16:45 | 45′ | 상권영향평가서 등 작성 시연 | 조춘한 연구원 |
| 16:45~16:55 | 15′ | 질의 응답 | |
| 16:55~17:00 | 5′ | 폐 회 | |

## 붙임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제

### □ 작성주체(법 제8조제1항)

○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(SSM)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*하려는 자

* 점포 소재지 변경,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,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)

### □ 보완요청(법 제8조제2항) 및 보완요청기간(시행령 제6조의5)

○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 불산입)에 보완요청 가능

○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'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'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며, 이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 불산입)에 보완요청 가능

### □ 상권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(규칙 제5조제1항제2호)

○ 요약문, 사업의 개요, 상권영향분석의 범위, 인구통계 현황 분석,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, 상권의 특성 분석, 상권영향기술서

| | |
|---|---|
| **사업 개요** | · 개설자, 개설지역,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, 대규모점포등의 종류, 매장면적(㎡) |
| **상권영향 분석의 범위** | · 공간적 범위를 위치도 또는 지형도로 제시<br>- 대규모점포 : 개설지역 반경 3km<br>- 매장면적 330㎡ 이상 SSM : 개설지역 반경 500m<br>- 매장면적 330㎡ 미만 SSM : 개설지역 반경 300m |
| **인구통계** | · 거주인구수와 세대수, 연령분포와 소득분포, 유통인구 현황 및 분석 |
| **기존 사업자** | · 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, 전통시장, 전통상점가, 소매점 현황 및 분석 |
| **상권의 특성** | · 상권 내 주거형태, 교통시설, 집객시설,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분석 |

### □ 지역협력계획서의 주요내용(규칙 제5조제1항제3호, 제5조제3항)

○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

*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거래를 유발, 소비자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,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은 배제